



제 1132 호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159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 조례 제1160호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 조례 제1161호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2

공 고

- 공고 제2013- 1401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4
- 공고 제2013- 1402호 재난관리실태 공시 25
- 공고 제2013- 1410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문 공고 58
- 공고 제2013- 14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등록 통지 공시송달 61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제2013- 30호 예정공고 62

고 시

- 고시 제2013- 99호 도로명주소 고시 63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1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2013. 2. 28부터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총무과)	1.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 회 사무국장
	2.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의 회 사무국장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부정의료업자 단속 사.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제63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의료법」 제84조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92조	보건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22조 「약사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의료기기 변경신고 다. 휴·폐업 신고 라.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32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1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2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7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8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7조	보건소장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2조의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9조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결핵예방법」 제15조 「결핵예방법」 제18조 「결핵예방법」 제10조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제19조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에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보건소장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모자보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8.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19.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제18조	
	2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2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1조	
	2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과징금처분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라.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등 바. 청문 사. 보고·검사 등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 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정신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정신보건법」 제20조 「정신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정신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보건소장
	23.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5조	
	25.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26.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	
	2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27조	
	28.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신고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라.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바.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청문 자.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카.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타.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파. 위임 및 위탁 하. 수수료 거. 과태료 부과징수 너. 위생교육 행정지원 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같은 법 부칙 제5839호 (1999.2.8) 제3조	보건소장
	29.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다. 면허취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0.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나. 식품 등의 재검사 다.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등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명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보건소장
	바. 영업 승계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사. 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아. 품질관리 및 보고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	
	차.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카. 위생등급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파. 위생수준 안전평가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하. 시정명령·시설 개수명령·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거.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너.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더. 품목 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러.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같은 법 제77조	
	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같은 법 제78조	
	버.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서. 청문	같은 법 제81조	
	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처. 위반사실 공표 등 커.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터. 식품진흥기금 퍼. 포상금 지급 허. 수수료 고. 과태료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보건소장
	31.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결격사유 다. 면허취소 라. 면허증의 재발급 마. 면허증의 반납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0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등 나. 영업의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영업허가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포상금 지급 타. 권한의 위임·위탁 파. 과태료 부과징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바. 시정명령 등 사. 청문 아. 과태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보건소장
	34. 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석요구 나. 사건 송치 및 의견서 작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제21호, 같은 법 제6조 제6호·제18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65조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남동문화 예술회관장, 지식정보 센 터 장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남동문화 예술회관장, 지식정보 센 터 장
구청장 (문 화 체육과)	1. 남동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남동문화 예술회관장
	2. 소래역사관 및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식정보 센 터 장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복지정책과)	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 장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2.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처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3.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조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동 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동 장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 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동 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별표 형식 변경
 - 위임자(소관부서), 위임사무, 근거, 수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형식(타 지자체 별표 형식 조사 후 우리구 조직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식 도입)
- 보건소 위임사무 재정비
 - 조직개편 전 식품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의 일제정비(신규 위임사무 추가, 불필요한 사무 삭제, 근거법령 수정 등)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1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명칭, 위치, 면적 및 기간 등을 구보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표 2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별표 2]

과 태 료 수 납 부(제6조 관련)

[illegible]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제2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 지정장소 : 바다, 바닷가, 해수면, 내수면(공공용, 사유) 등
 - 통제구역의 명칭, 위치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 또는 상실 된 경우
 - 낚시통제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5조)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1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기업의 관계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북한이탈주민 지원협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관계자를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현행 법률용어 준수 및 협의회 구성원 추가 (제6조제3항제2호)
 - “새터민” 용어를 “북한이탈주민” 법률용어로 규정
 -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원으로 “기업의 관계자” 추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14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년 9월 30일 ~ 2013년 10월 14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2. 당사자	성명	김완수	주민등록번호	680506-1*****
	주소	인천 남구 주성로31번길21, A동 000호(주안동, 동일빌리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4.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697번지 미래탑빌라 302호 외3건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액 : 금23,400,000원(금이천삼백사십만원정) ※ 과징금을 납부하실 경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12.2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402호

201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2회 발생하여 피해는 122건 534백만원이며, 복구는 84건 6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태풍(호우)재난은 2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534백만원 이며 복구는 84건, 6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우리구의 재난발생현황은 태풍에 의한 호우와 강풍 피해가 높게 발생하였고, 호우로 인한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태풍에 동반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농작물과 건물 외벽·담장이 넘어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4개과 85명으로 5년 평균보다 5명 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3명 감소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7종으로 1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6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남동구 일원 12개소/48세대 반지하 주택 등에 50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하였으며
 - 도로 침수시 인근 주택 및 상가 출입구로 유입되는 노면수 차단을 위한 차수판을 17세대(7백만원)에 설치하였습니다.
 - 침수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관 준설 15km, 파손된 하수관 보수 등에 460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 계층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 445가구에 전기, 가스 등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침수, 대설, 강풍 등 취약계층 708 가구에 풍수해 보험료 2,32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적립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457백만원 이나 560백만원을 확보하여 122%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327백만원 보다 130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6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162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0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백만원을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0개 등급중 4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등급 변동 없습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남동구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 완료되어 100%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구의 재난관리역량은 풍수해(태풍, 호우 등)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추진실적은 우수하나 지진해일 관련 예방 및 대비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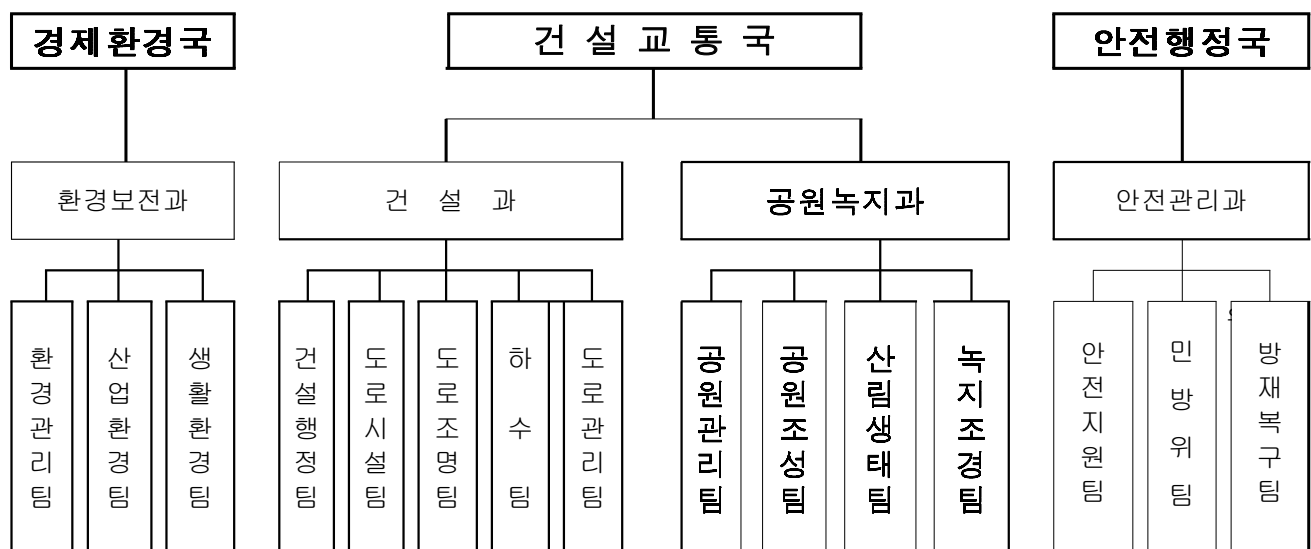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2012.7.05	집중호우	-주택침수 49세대 -상가 침수 23개소	-재난지원금 40.5 백만원 지원	침수피해 복구 지원
2012.8.28	태풍(강풍)	-비닐하우스 12동 -농작물 29 ha	-재난지원금 26.5 백만원 지원	강풍피해 복구 지원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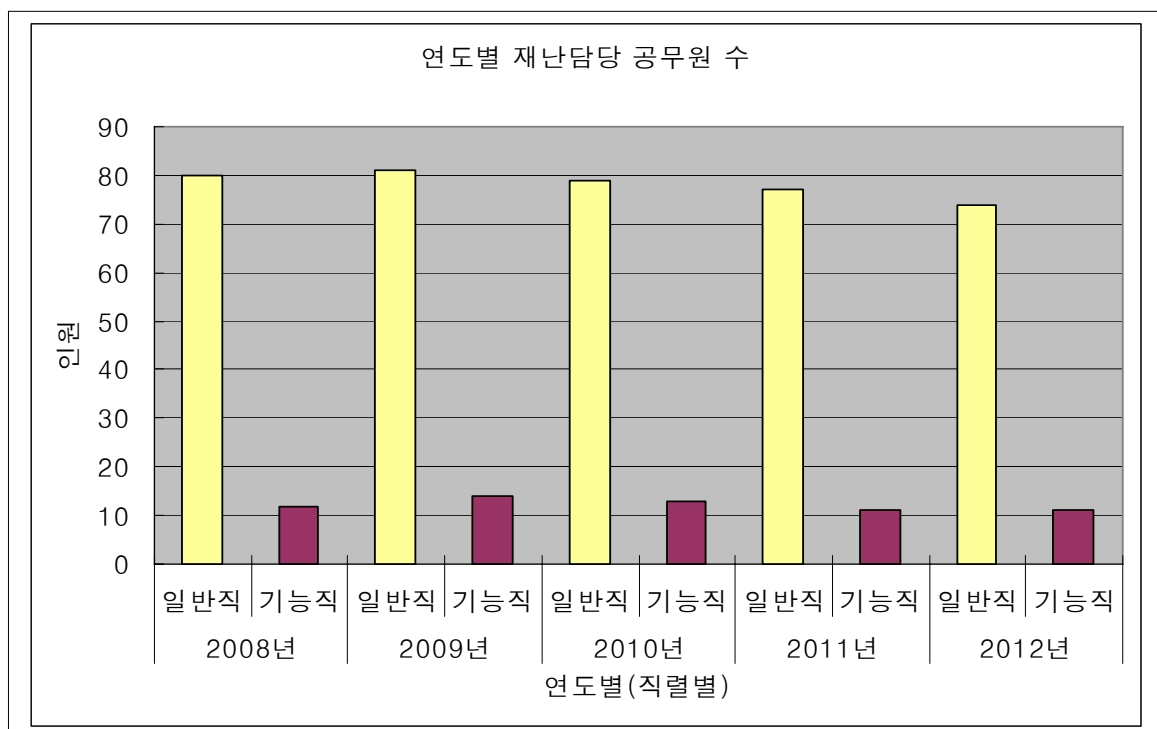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85	74	1	4	20	24	21	4	9	2
	현원	85	74	1	4	20	28	17	4	9	2
안전관리과	정원	18	12		1	4	4	2	1	4	2
	현원	18	12		1	4	5	2	0	4	2
환경보전과	정원	19	18		1	5	7	5		1	
	현원	17	16		1	5	6	3	1	1	
건 설 과	정원	28	25	1	1	6	9	8		3	
	현원	29	27	1	1	6	11	7	1	2	
공원녹지과	정원	20	19		1	5	4	6	3	1	
	현원	21	19		1	5	6	5	2	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직 현원(인원)	80	81	79	77	74
기능직 현원(인원)	13	14	13	11	11



☞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담당 부서 공무원 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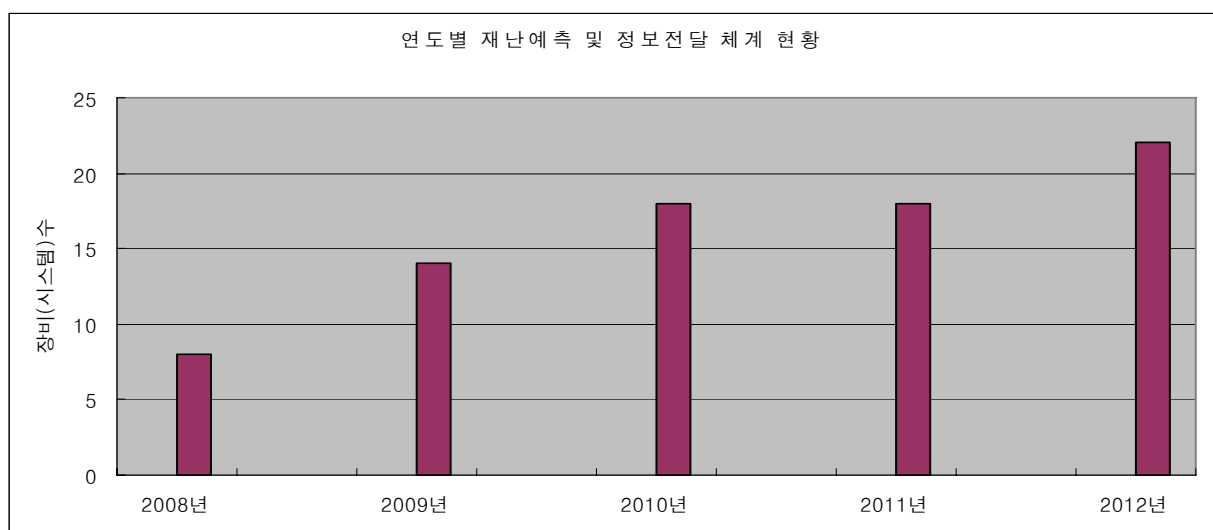
- 기능직 공무원의 감소 추세 반영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남동구청
자동우량관측장비	1	남동구청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	남촌동2, 논현동1, 고잔동1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남동구청 외 5개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6	남동구청 외 5개소
산불감시카메라	2	만월산, 소래산
태양광 무인방송홍보기기	2	만월산, 소래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8	14	18	18	2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0	0	1	1	1
자동우량관측장비	0	0	1	1	1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0	0	0	0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3	4	6	6	6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6	6	6	6	6
산불감시카메라	0	2	2	2	2
태양광 무인방송홍보기기	2	2	2	2	2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영상감시시스템 4개소 등 설치에 따른 증가

(3) 재난 발생 대비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지진방재 실무교육	2012.5.29	소방방재청	1	
자연재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2012.5.30	소방방재청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워크숍	2012.11.29	소방방재청	1	
재해복구·구호 담당공무원 교육	2012.5.30~5.31	소방방재청	1	
산불방지연찬회	2012.6.7~6.8	산림청	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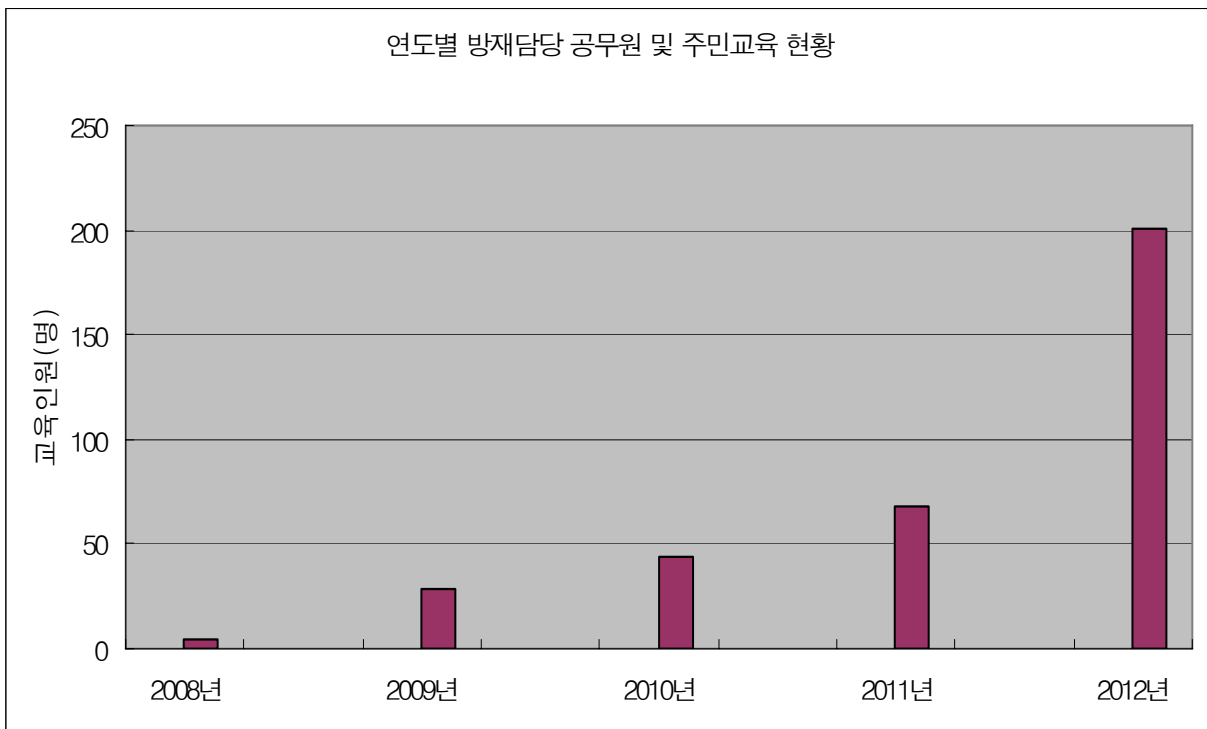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2.12.3	남동구청	50명	방재교육 및 제설훈련	남동구 안전관리과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 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심폐소생술 교육	2012.4.25	남동구청	40	심폐소생술 교육	남동구	
민간단체역량 강화교육	2012.6.26	남동구청	90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관리 역량강화 교육	남동구	
안전모니터 봉사단교육	2012.12.3	남동구청	16	재난의 개념과 대처 방법 민간분야 현장활동 사례	남동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	28	44	68	201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4	4	7	3	5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0	24	24	50	50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0	0	13	15	146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관리와 방재교육 및 홍보 대폭 증가
-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증가

라.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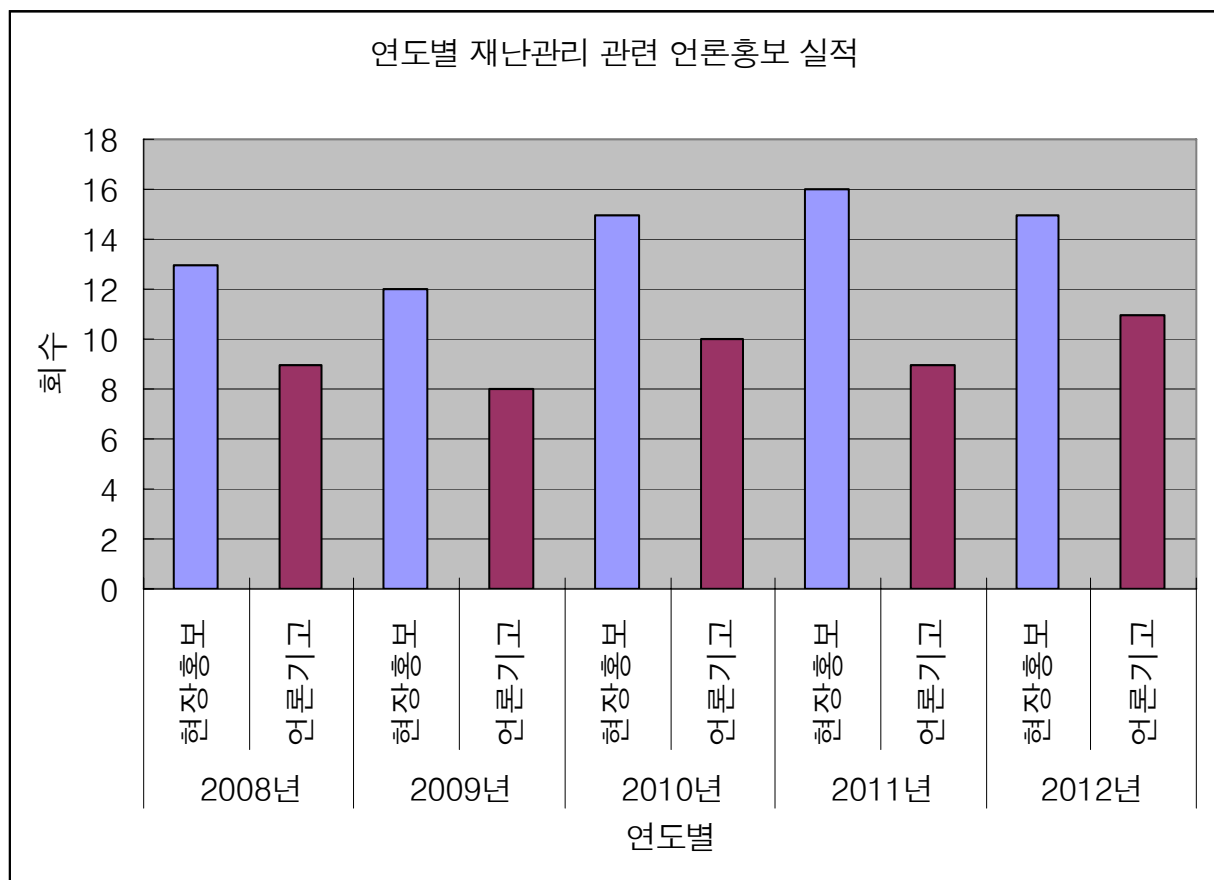
연번	행 사 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화재, 가스 등 사고 예방 안전점검 및 홍보 등	매월 4일 (연12회)	남동구 관내	1,200	
2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나무심기 및 산불캠페인 등	2012.3.29	논현동 주변	200	
3	안전점검의 날	산불캠페인	2012.10.25	소래산	70	
4	산불진압훈련	산불진화훈련 등	2012.12.6	오봉산	100	
	합 계		15회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봄철산불방지 비상체제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운영	2012.02.03	인천일보 외 8개	공원
2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남동구 화재, 가스, 전기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등	2012.2.23 등 6회	경기매일 외 3개	
3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나무심기 및 산불캠페인	2012.03.29	경인일보 외 6개	
4	산림보전 특수시책	주요등산로 주변 간이 소화수 설치	201.04.16	남동뉴스	
5	만월산 초기진화	만월산 화재 초기진화의 일등공신 간이소화수	2012.04.20	남동뉴스	
6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운영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운영	2012.11.15	시민일보 외 8개	공원
	합 계		11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현장홍보실적(횟수)	13	12	15	16	15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9	8	10	9	11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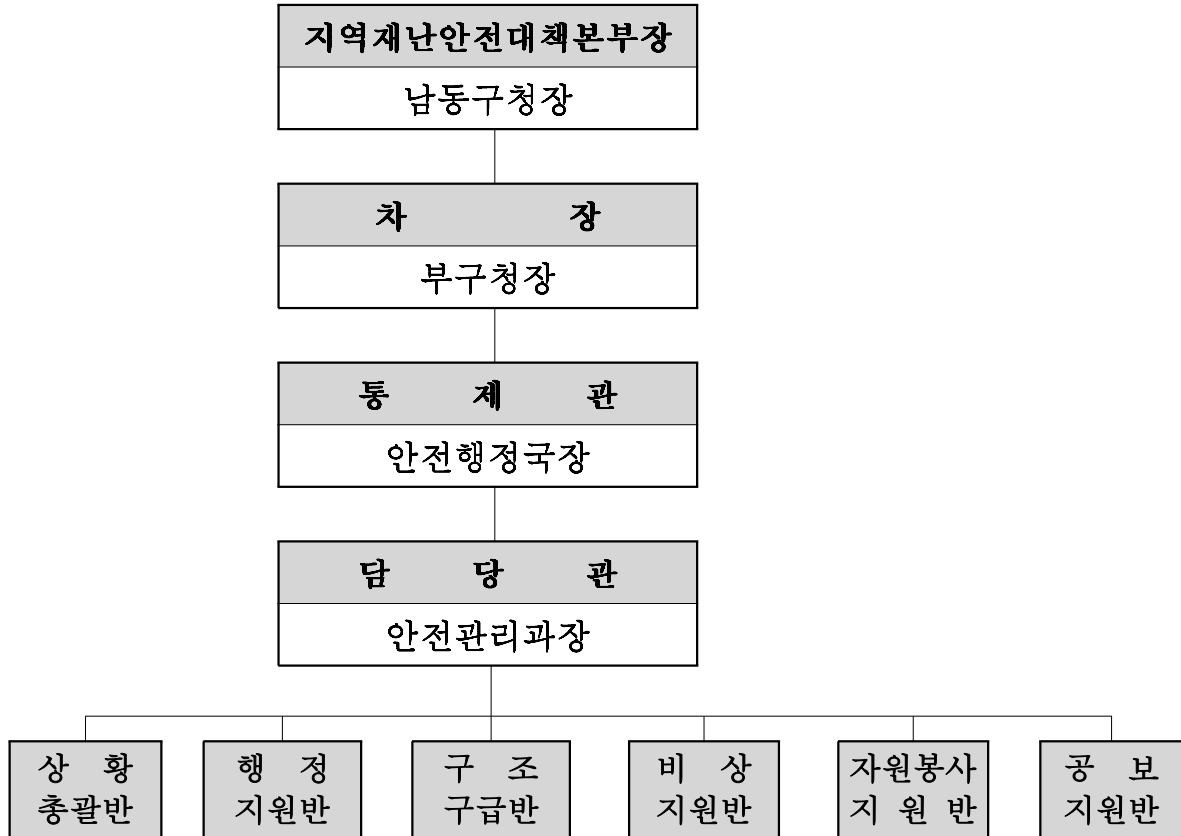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 22 인	• 남동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남동구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남동구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남동구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남동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8 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구청장 • 위원 : 인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9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남동구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구청장→인천광역시→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8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남동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남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실무반 구성은 남동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준함, 다만 홍수대책팀은 상황총괄반과 통합하여 운영

□ 실무반 임무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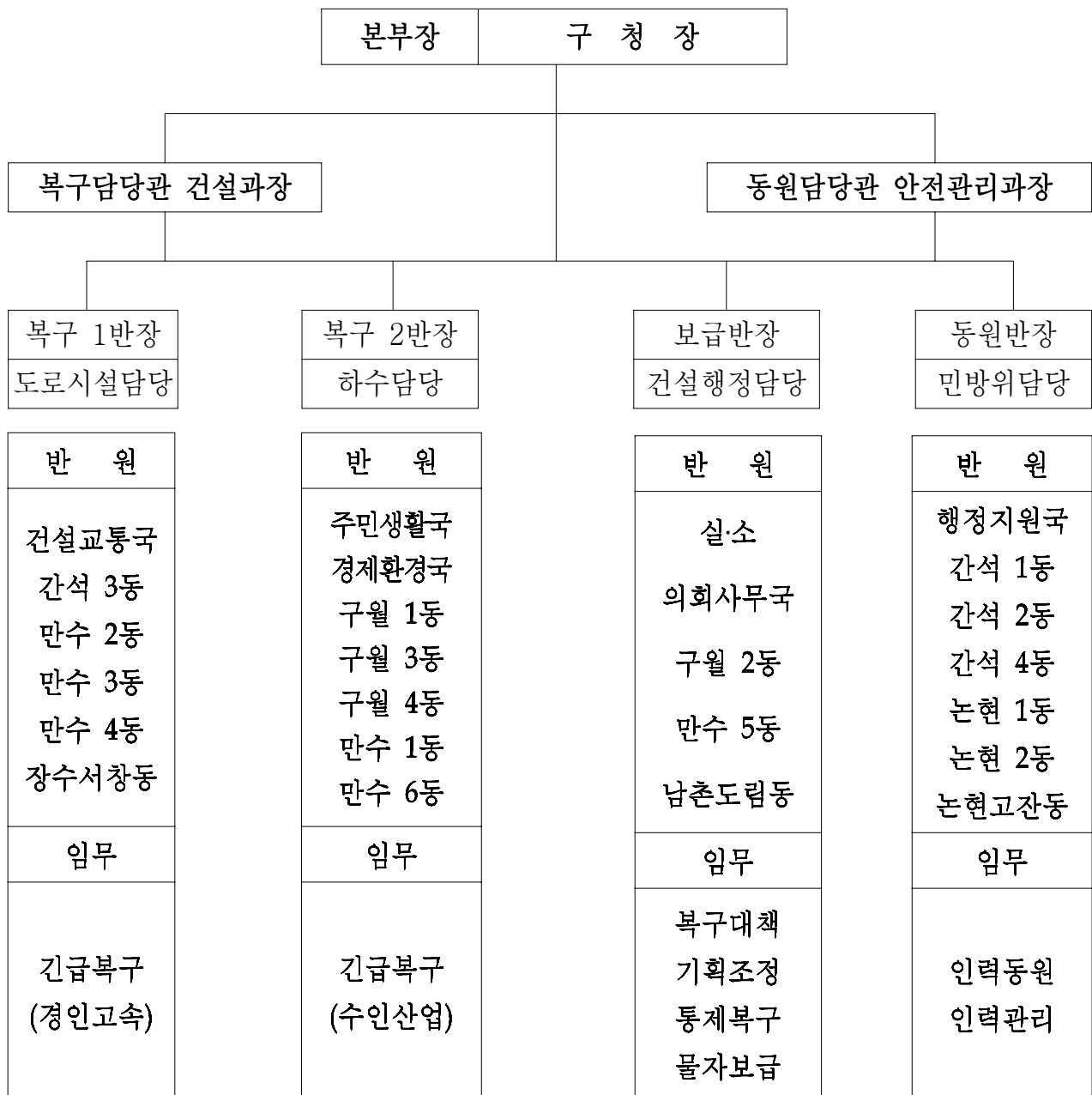
○ 상황총괄반 : 남동구 및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안전관리과)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지원반 : 남동구 공무원으로 구성(총무과 등 6개 부서)
 - 주요인사방문 의전, 상황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조구급반 : 남동구 공무원으로 구성(보건행정과 등 8개 부서)
 -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 비상지원반 : 남동구 및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
 - (건설과 등 7개부서, 남동경찰서, 남동소방서 등)
 -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자원봉사지원반 : 남동구, 관련 자원봉사단체(사회경제정책과)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공보지원반 : 남동구 공무원으로 구성(홍보미디어실, 문화체육과)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등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도로, 하수도, 교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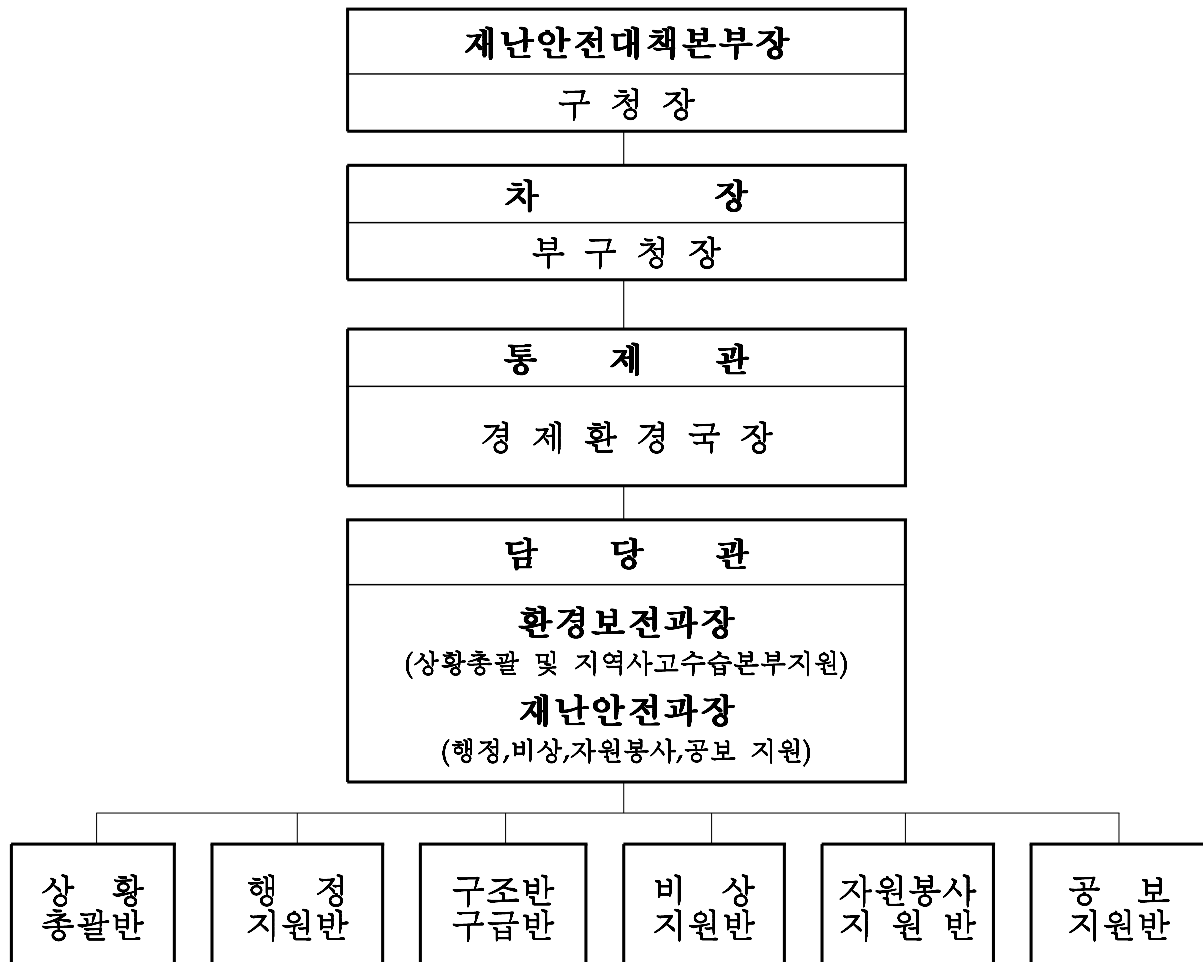


□ 실무반 임무 및 역할

○ 상기 조직도 참조

[유해화학물질]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구 분	비 상 단 계 임 무
통 제 관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본부장, 차장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반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 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 긴급상황 관리 (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구 분	비 상 단 계 임 무
	○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정지원반	○ 근무명령 발령 (공문발송 전 해당 실과 서무에게 유선통보 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 ○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 ○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각종 회의 준비 및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시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근무 및 근무체계 개선 및 근무수칙 보완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별에 피해 및 응급복구 종합상황을 해당 남동구 홈페이지의 재난관련 코너에 게시토록 독려 ○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상황 관리 ○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계 가동 ○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구조요원 등)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비상지원반	○ 관련실과 및 파견기관별 소관현황 파악 ○ 파견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 파견 기관별 상황대처 관련 각종 회의, 대책, 지침, 지시사항 등에 대한 자치단체·관련기관의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 파악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 지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구 분	비 상 단 계 임 무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및 군 병력·장비 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인 ○ 시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 철도, 교량, 도로, 항공 등 교통통제 및 해제 사항 •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상황 등 ○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자원봉사 지원반	○ 남동구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지원내용, 인력, 필요장비 등 양식 작성) ※ 단순인력과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배분·배치하고,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도구, 장비 등 사전준비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 타 시·도 자원봉사 지원 ○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공보지원반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자막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 라디오, 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각종 TV, 라디오 인터뷰 전담 ○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 단 체 별	협 조 · 지 원 사 항	연락처(☎)
남동경찰서	○ 차량통제 및 교통관리 지원 ○ 현장출입 통제 지원	718-9329
인천남동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긴급구조 지휘·통제	870-5280 816-1190
인천 동부지원교육청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교육 ○ 각급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460-6241
육군 제7851부대	○ 인력 및 장비 지원	620-6410
남동수도사업소	○ 단수 및 비상급수 대책	720-3441
인천상공회의소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 재난예방 안전점검 지원 ○ 재난대비 안전의식 교육 강화 ○ 재난업무 지원 및 협조	810-2800 810-9344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 전력차단 및 공급 ○ 비상발전기, 조명등 설치	830-5267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 인천지역본부	○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 정기적인 안전점검	440-6811
KT인천지사	○ 긴급전화 가설	426-900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인천지역본부	○ 가스차단 및 공급 ○ 정기적인 안전점검	420-3150 570-7942 834-3764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439-7272 437-3381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 구호물자 지원 및 구급교육 지원·협조	815-5015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현장 의료소 설치 ○ 응급환자분류 및 응급조치	460-3114
남동모범운전자회 해병대인천남동구전우회	○ 경상자 후송 차량 지원 ○ 재난현장 교통질서 계도 ○ 인력지원	463-6880 466-7677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	○ 재난현장 자원봉사	446-3320

[산불 발생]

산
불
발
생

⇒

진화상황 보고

도시공원과 사무실
(산불대책상황실)
(☎453-2870)

※ 21:00 이후
당직실(453 - 2222)
상황유지

⇔

관련부서 협조(구산하 인력동원 및 차량지원)

가. 재난상황종합상황실 보고
나. 구 산하 직원 동원 → 총무과, 안전관리과
다. 산불진화인력 수송 → 재무과
라.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 보건소

⇔

유관기관 협조

가. 헬기지원요청 여부 판단 및 지원 요청
- 시(공원녹지과) : 440 - 3684
나.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남동경찰서 : 실·방화범 색출 및 검거요청
(469-5002)
- 소방서 종합상황실 : 진화출동 요청
(870-3139)
- 군부대 진화인력 및 잔불진화 동원협조
· 육군제7851부대(9공수) 620-6410
· 육군제2291부대(17사단) 512-1113
- 한전 신인천전력소 : 송전선로 인근 산불시
(주)570-7351~2 / (야)570-7466~7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진에 의한 피해발생후 2차 피해 방지 및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	2012.12.31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표준행동 매뉴얼 제정	2012.3.22	

※ 작성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련 제정한 조례, 조례 시행규칙, 규정, 매뉴얼 등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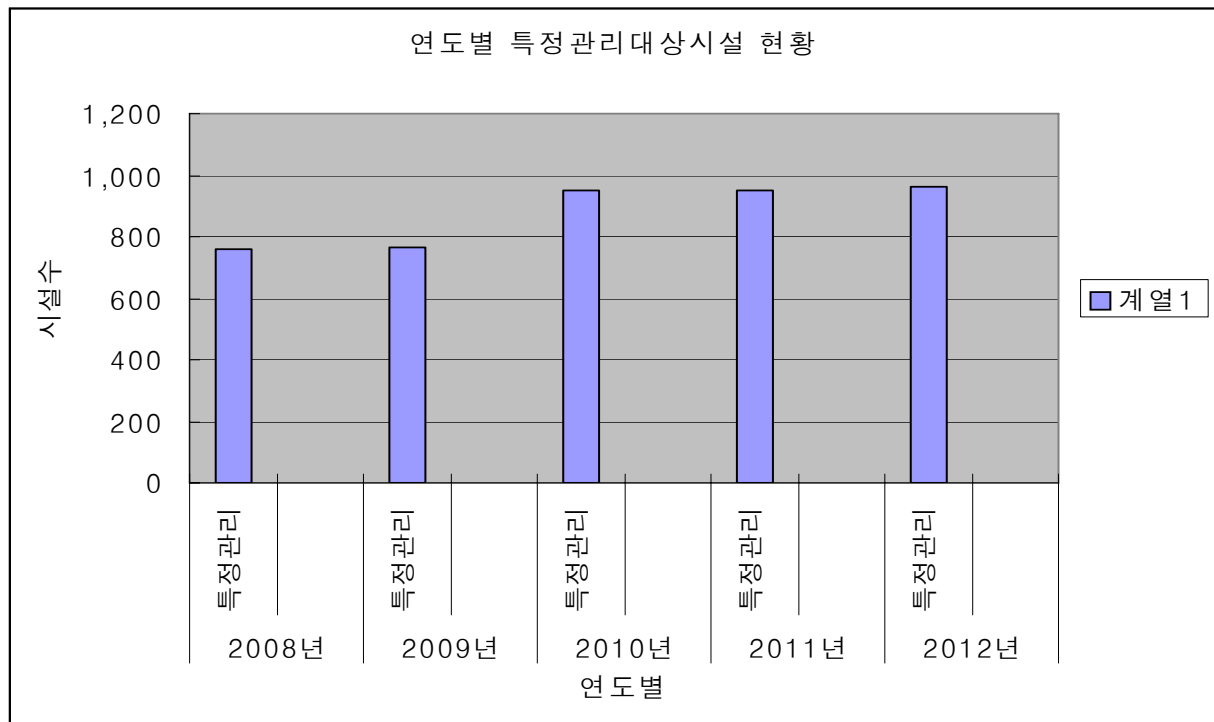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육교	지하 차도	옹벽 축대 석축	소계	공공 청사	공동 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 시설	신종 업종	
965	28	9	2	17	937	24	474	201	152	26	14	46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965	964	339	576	49	1	1	-	
시설물	28	27	3	19	5	1	1	-	
건축물	937	937	336	557	44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정관리대상시설등	761	765	948	952	965
재난위험시설	1	1	2	1	1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위험시설은 1~2개로 그래프 작성 제외
- 특정관리시설은 지침의 개정으로 해당 시설 증가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옹벽	팬더아파트 옹벽	H=4.5m L=43m	민간	1997.7. 19	등급 조정	-	월1회 점검 실시	-

☞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시설 변이를 지속적 관찰중이나 변이 없음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상반기	4. 16 ~ 6. 14	953	953	12	해당시설 관리부서 조치
하반기	하반기	9. 1 ~ 11. 23	965	965	29	해당시설 관리부서 조치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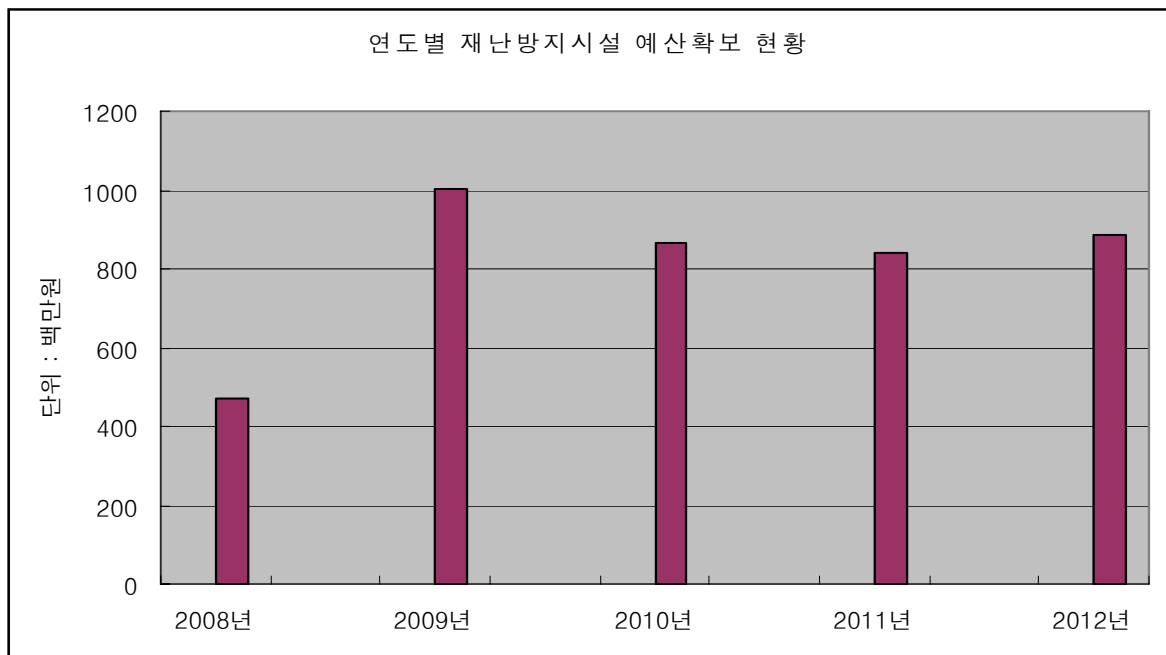
가.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하수관거 정비 및 보수공사	간석, 구월 만수동 일원	하수관거 정 비 및 보수	2012.2.28 ~12.30	503	침수예방
하수역류 차단장치	남동구 일원	하수역류차단 장치 설치	2012.5.2~ 11.20	53	반지하세대 침수예방
만월로 급경사 지 보수공사	간석동1-640	급경사지 토 사, 낙석방지	2012.9.13~ 12.30	332	붕괴사고 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70	1,002	867	842	888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하수관 증설, 확장 및 보수, 맨홀박스 설치)관련 예산 증가와 2011년부터 하수역류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증가

나. 물자 및 자재의 비축

[방재물자]

구 분	계	오일 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흡착분	소석회
		m	BOX	BOX	통	BOX	포
총계	636	4	9	3	31	8	10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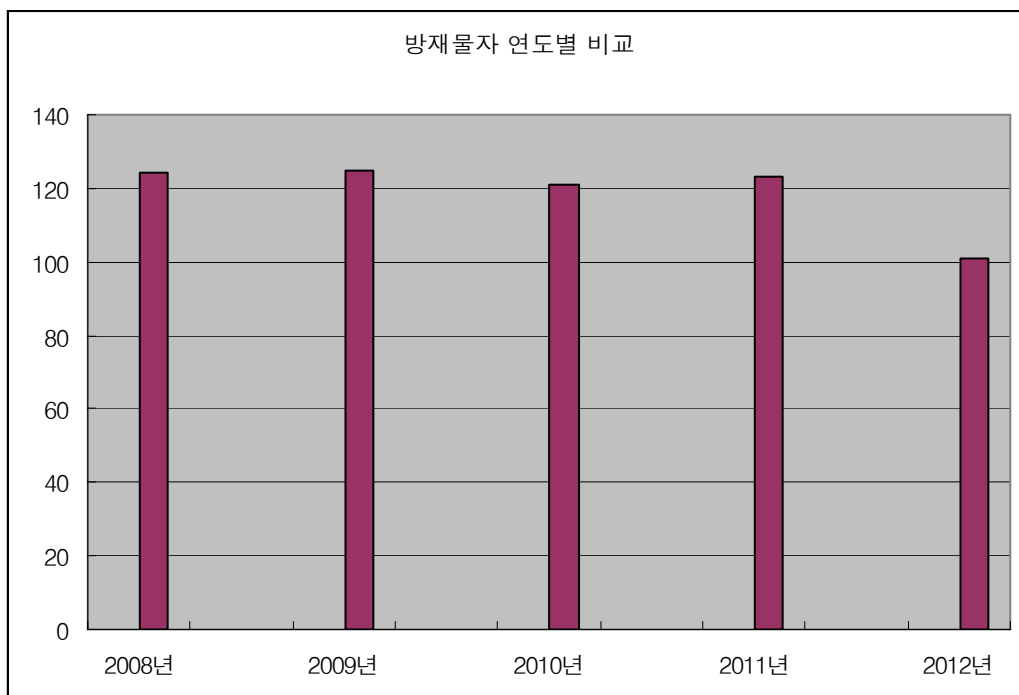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585	849	1,172	18	4,819	1
병 원	583	844	1,156	17	4,819	1
보건소	1	4	13	1	0	0
기 타	1	1	3	0	0	0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46	36,495	39	35,715	0	0	2	150	4	540	1	9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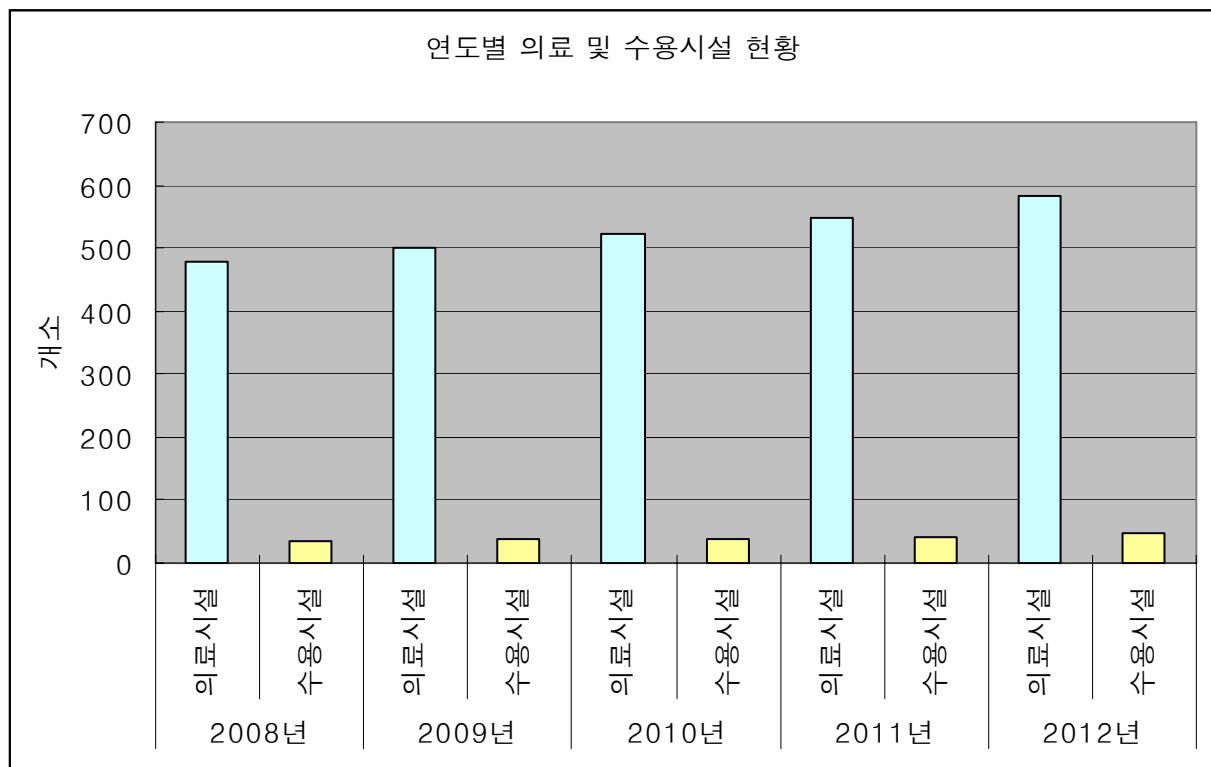
방재물자 종류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24	125	121	123	101
오일웬스(m)	60	60	60	60	40
유흡착포(BOX)	9	10	8	9	9
유흡착롤(BOX)	5	5	3	5	3
유처리제(통)	32	31	31	31	31
흡착붕(BOX)	8	9	9	8	8
소석회(포)	10	10	10	10	10



-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오일웬스 20m 사용 외 특이한 변동사항 없음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시설수		479	501	524	548	583
수용시설	개소	36	38	38	41	46
	수용인원	26,537	28,446	28,446	31,432	36,495



-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소래, 논현, 서창 등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의료 및 수용시설 증가

다.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 분	계	사다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헬기	기타 (구급차)		
총 계	37					37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볼도 우저	덤프	청소차	지게차	기중기
총계	65	1	11	8	14	13	16	2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감시 카메라	무전기	등짐 펌프	갈퀴	소방 호스	진화 차량	비고
총계	168	2	37	62	60	5	2	

◆ 기타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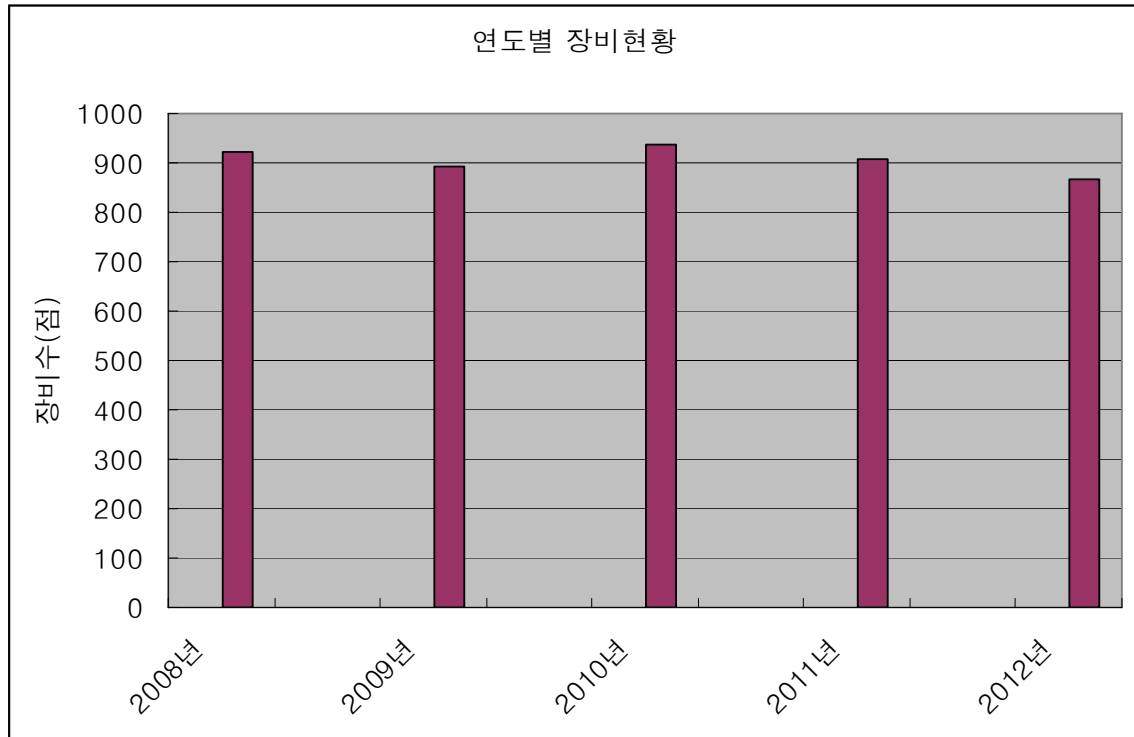
구분	계	기계톱	삽	양수기	비고			
총계	594	11	11	57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21	893	936	909	865
구조장비	36	36	36	37	37
복구장비	63	63	65	65	65
산불진화장비	170	150	170	150	168
기타장비	652	644	665	657	595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기타장비중 노후 양수기 폐기 등에 따른 감소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53	4	4	1	2	3	2	7	30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인원	93	15	63	13	0	0	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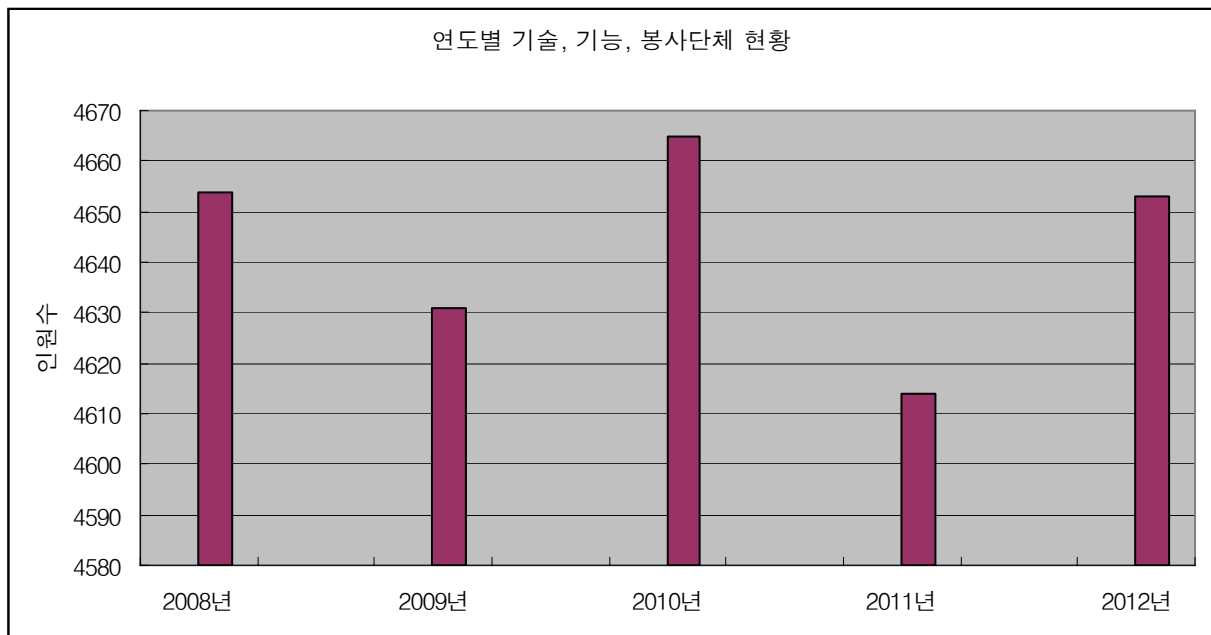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전 우회	모범운 전자회	여성단 체협의회	기타
인원	4,507	6	0	0	1	0	100	580	100	130	1,100	2,127

※ 기타 :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재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4,654	4,631	4,665	4,614	4,653
기술인력	52	51	54	53	53
기능인력	90	92	90	93	9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4,512	4,488	4,521	4,468	4,507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인력지정 특이한 변동사항 없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규모)	용역비 (백만원)	용역회사
		해당 없음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시

-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분석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재난위험 요인을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
-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
-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 작성방법 :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외 예시는 기관별로 서식 작성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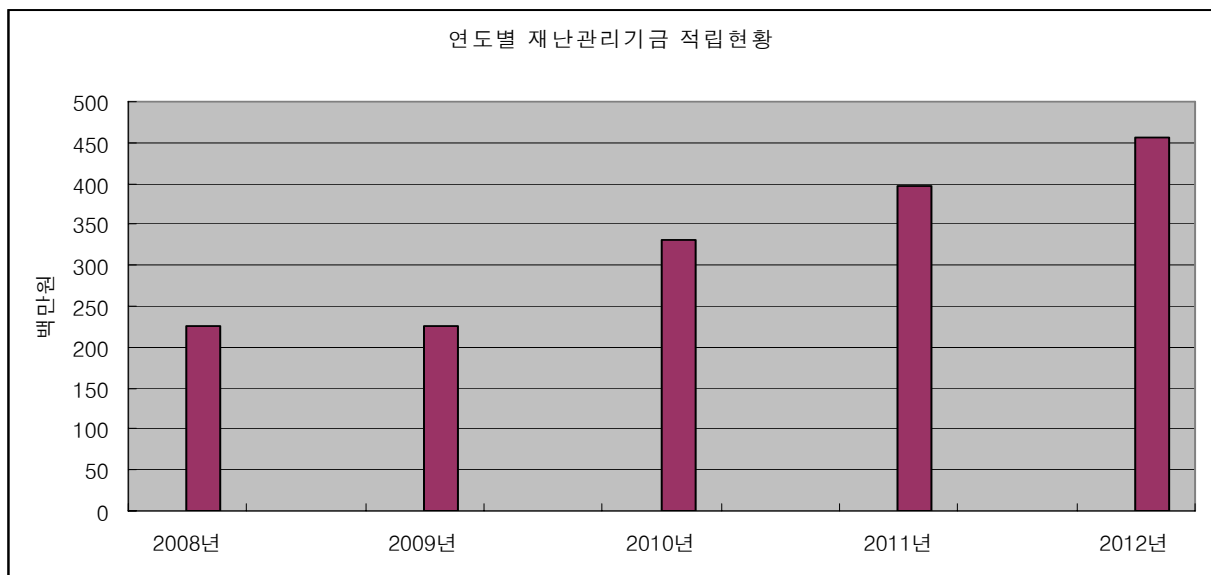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457백만원	457백만원	457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확보액(백만원)		226	226	332	396	457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0	0	80	200	74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0	0	19	0	31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0	34	118	0	140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0	0	0	0	0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0	0	0	0	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0	0	0	90	2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위한 상담활동	0	0	0	0	0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0	0	0	0	0



☞ 대단위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 구 세입(보통세) 지속적 증가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증가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82	0.788	0.100	4등급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등 급	진단기준	상이	미표시	4	4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08년~2009년은 지역안전도 등급 기준이 달라 미표시

⑤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2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남동구청사	3	3	-	-	10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해 당 없 음		
종합상황실		해 당 없 음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	-	-
내진율	100	100	-	-	-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남동구	남동구청(1)	46	1	0	1	46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	-	-	-	-
지구수(개소)		43	43	43	46	46
긴급대피장소(개소)		1	1	1	1	1
표 지 판	안내표지판	1	1	1	1	1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0	0	0	0	0
	대피로 표지판	1	1	1	1	1
경보시설(개소)		43	43	43	46	46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동구 안전관리과
(담당자 : 김동섭, 전화 : 032)453-23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1410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문 공고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급금액 : 연간 600,000원 이내
3. 신청자격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제외대상 :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 4,126,769원 이상인 세대 등
4. 지원항목 :
 - 지원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납입 영수증(2013년도분)을 신청시 첨부 제출
5.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심사 → 결정 및 개별 통보
6. 신청접수 등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 10. 07 ~ 2013. 11. 06
 - * 지급 예정 : 2013. 11월 이후
 - 접수 및 문의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그린벨트팀),
Tel 453-2974, Fax 450-2959
 - 신청시 제출서류
 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에 한함)
 3.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에 한함)
 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5.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 서류 제출)
8.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
9.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붙임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붙임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예시{제17조제2항관련}

1. 국토교통부와 남동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126,769원 이하이어야 한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만, 승용차 재산가액 산정시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자동차 1대.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 사용자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상이등급자)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13년 11월 6일까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T032-453-29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이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비
서
류

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에 한함)
3.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에 한함)
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5.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 서류 제출)
8.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
9.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2013 년 10월 2 일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공 고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3 - 1423호

자동차압류등록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의거하여 독촉 및 압류 사전통지 후, 기한 내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아 자동차 압류등록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불가(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고 및 통지사항 ▶

1. 공고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3. 공고대상

대 상 자 (생년월일)	주 소	반송사유	체납액(원)	압류물건 (자동차)	압류 및 압류통지일
김*미 (7611**-2)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폐문부재 이사/기타	750,000	26라68**	2013.9.23

4. 공고기간 : 2013. 10. 4. ~ 10. 31. (27일간)
5. 공고장소 : 남동구청게시판(홈페이지), 관보(구보)
6. 문의사항 : 남동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032-453-2143)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과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에는 담당부서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30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0. 1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0. 02. ~ 2013. 10. 11.(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휴게 음식점	만수1 휴-15	피자스토리	정현숙	백범로101번길 64, 1층 (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6.30	2013.10.14

6. 고 지 사 항

-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0. 1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6

2013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9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1외 2건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5번길 18-6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21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3건)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별 도 열 램(1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2013. 10.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차·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 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5번길 1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동사항 없음	2013.10.04	건축물대장 대표지번으로 변경	관련지번 5-321로 변경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36-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1	2009.7.6	간석동을 지나는 도로로 돌산이 있었다는 유래에서 반영	2013.10.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644번길 10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6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0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706	2009.7.10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10.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 370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0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8-1	2009.11.16	소래역로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10.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동로 8-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1을 건물번호로 부여	